

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26. 6. 23.>

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정원표(제4조 관련)

[illegible]